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86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문대림

안도걸 • 윤호중 • 채현일

이상식 · 김재원 · 권향엽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 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 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 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 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 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 조).

법률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어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안전검사기관은 <u>어린이놀이시</u>	어린이놀이시
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설에서 일어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u><신 설></u>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가
	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내
	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u>한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③ (생	제3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④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
	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u>다.</u>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u>⑤</u> <u>제4항</u> -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	
독기관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